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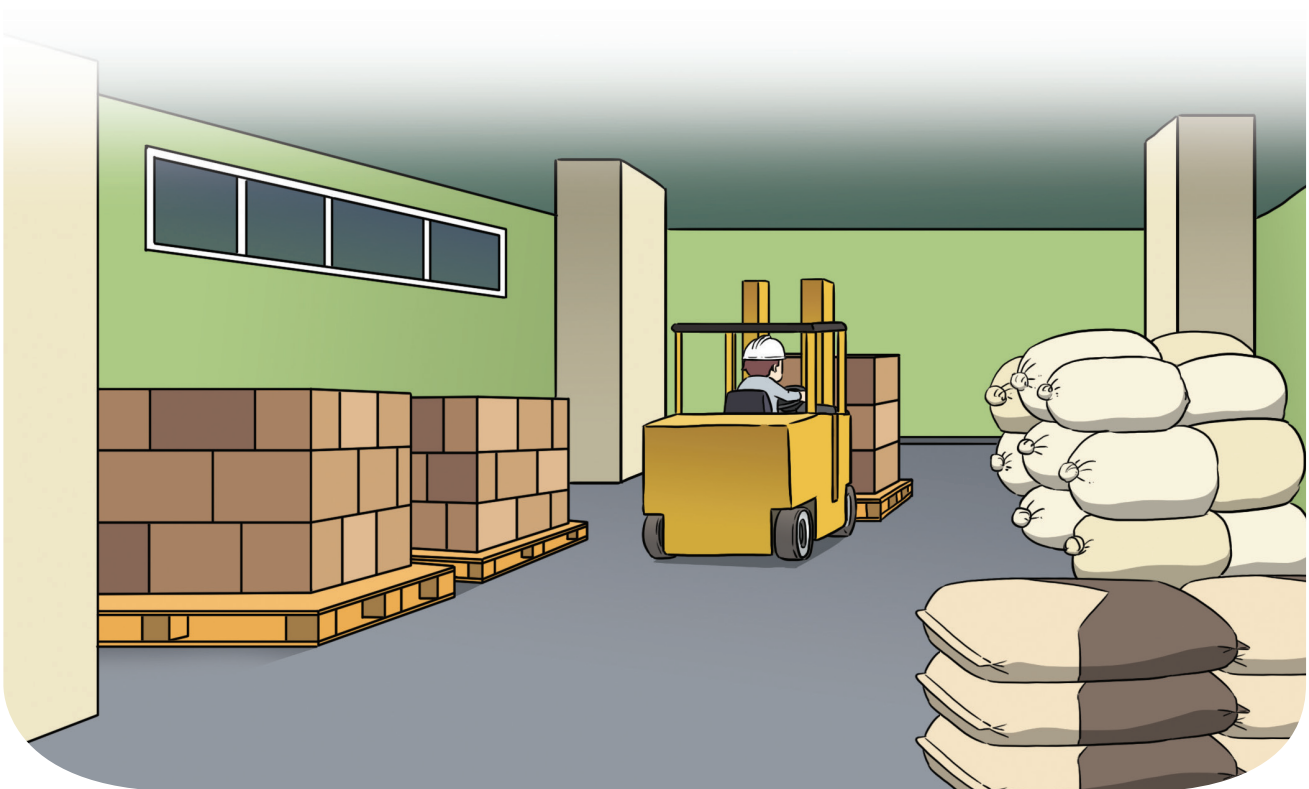
적재물 관리



도소매 및
소비자용품수리업

적재물이란?

금속 또는 비금속 자재, 재료, 폐지 등을 한 곳에 모아 쌓아 놓은 더미(뭉치)를 말한다.



● 적재물과 관련한 사망재해 사례 ●

- 우천으로 인해 물을 흡수 · 팽창하여 불안정하게 적재된 압축폐지가 낙하



- 적재물에 올라가 덮개를 덮고 고정작업을 하던 중 페타이어로 만든 로프가 파단되면서 추락





주요 위험요인

- ✔ 적재물의 붕괴 또는 낙하
- ✔ 과도한 중량 적재에 따른 적재대 붕괴
- ✔ 적재물 위에서 비닐커버 씌우는 작업이나 이동 중 추락
- ✔ 적재물 위에 오르내리던 중 추락
- ✔ 과도한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

안전대책

- 일정 높이 이상 적재 금지
- 높이가 있는 적재물은 3단 이상 적재를 금지
- 하단을 수평되고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안정되게 적재
- 상단의 높이가 높은 적재물을 오르내릴 때 사다리 사용
- 상단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적재물 위에서 작업할 때의 안전조치
 - 안전모, 미끄럼방지 기능의 안전화, 안전대(벨트) 등 개인보호구 착용
 - 급하게 뛰어다니지 않는 등 천천히 이동
- 중량물을 적재하는 적재대는 충분한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
- 적재물은 중간에서 빼내지 말 것
-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150룩스 이상의 조명 확보
- 중량물은 지게차 등 동력기계 사용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들어서 적재



일정 높이 이하로 가지런히 적재



적재대 활용한 적재





재해사례 : 적재대가 파손되면서 중량물이 붕괴

개요

도소매업체의 저온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밤을 선별·소분하기 위해 적재대에서 밤포대를 꺼내던 중 밤포대가 붕괴되며 1명은 압사, 다른 1명은 바닥에 부딪혀 사망



발생원인

- 중량물(포대 1개당 40kg) 취급 적재대의 구조 안전성 미확인
- 적재대의 파이프 연결부 용접불량 및 부식(녹) 발생
- 선별·소분 작업을 위해 밤 포대를 끌어냄으로써 하중이 가중됨

예방대책

- 적재물 취급 시 안전작업방법 준수
 - － 밤 포대 적재용 팔레트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
 - － 적재대의 파이프 연결부 용접상태 및 부식(녹)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실시
 - － 동력기계 등을 사용해 밤 포대를 들어서 꺼냄
 - － 중량물 취급방법 및 운반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을 실시





안전수칙

작업 전

- 적재물의 크기, 형상, 중량 등의 특성을 파악한다.
- 중량물 적재대는 충분한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, 주기적으로 점검한다.
-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인하고 준비한다.
-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는 150룩스 이상의 조명을 확보한다.
- 작업 전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.
- 중량물 취급방법 및 운반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.

작업 중

- 일정 높이 이상 또는 높이가 있는 적재물은 3단 이상 적재를 금지한다.
- 하단을 수평되고 평평하게 하는 등 안정되게 적재한다.
- 상단의 높이가 높은 적재물을 오르내릴 때에는 사다리를 이용한다.
- 적재물 위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않는다.
- 작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지 않는다.
-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철저히 착용한다.
- 적재물은 중간에서 빼내지 않는다.
- 중량물은 지게차 등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두명 이상이 함께 들어 취급한다.

작업 후

- 작업 후 5분 정도의 간단한 마무리 스트레칭을 한다.
- 개인보호구를 청결하게 세척 · 관리한다.

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3조 (전도의 방지)
 - 제13조 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 -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 - 제48조 (울타리의 설치)
 - 제8조 (조도)
 - 제21조 (통로의 조명)
 - 제43조 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